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9.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국민 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정비과제로 발굴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개정된 지역보건법 적용 (안 제1조)
- 나.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안 제2조)
- 다.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안 제3조)
-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불필요한 조항 삭제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 나. 예산관련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해당 없음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상향 부과기준은 각 위반 행위별로 동일 위반행위의 횟수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또한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서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다.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도 이전에 당해 영업(소)에 행해진 처분(이에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이 집행 중인 처분 등)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2. 개별기준

부과대상	근거법령	부과금액(단위 :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가. 「지역보건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1호	100	300	300
나. 「지역보건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소 등으로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2호	100	300	300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소관 실·과		보건행정과
입 안 자	과 장	이 재 근
	담 당	강 영 희
	담 당 자	박 준 삼 (480-4023)